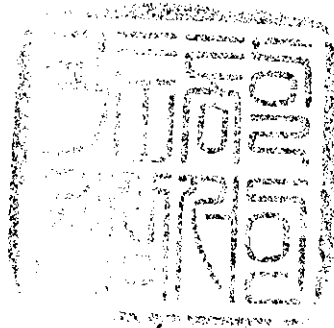


북한의 생활 환경에 관한 연구



363

1972. 6.

연구위원 양재모



목 차

1. 서론	1
가. 1945년 이후의 사회구조의 변화	1
1) 엘리트	3
2) 사회(단체) 활동 참여	4
나. 가족	5
1) 가족에 대한 정책	5
2) 여성의 지위	9
2. 생활환경	12
가. 개론	12
나. 공약과 업적	15
다. 보건 위생	17
1) 연혁	18
2) 조직	19
3) 환경위생	22
(가) 상수공급	22
(나) 오물처리	22
(다) 곤충과 쥐	23
4) 일반 질병	23
5) 전염병 관리	23
라. 공공사회복지	24
마. 영양, 의복 및 주택	25
1) 식품	26
2) 의복	29

3) 주택	30
바. 공공 편의 시설	33
사. 소비 양식	33
아. 여가 활동	39
1) 공휴일	40
2) 체육	40
자. 기타 생활 양상	41
1) 여행 제한	41
2) 양친	42
참 고 문 헌	44

1. 서론

생활환경의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1945년 이후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할 필요를 느낀다.

가. 1945년 이후의 사회구조의 변화

공산주의 정권은 의식적으로 과거의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재조직하였는데, 이것을 도와준 여건은 첫째로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제치하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실권, 둘째로는 1945~1953년 동안에 많은 엘리트들의 남하, 셋째로는 한국동란 중에 도시가 완전 파괴됨에 따라 인구의 완전 이동 등이다.

1953년에 한국동란이 끝나자 북괴정권이 결정하여 실시한 집단농장은 사회구조를 재편성하고 인민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켰다. 1958년에는 농토의 사유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협동영농이야말로 북괴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통제를 가하는 기본 단위로 되었다. 1960년에는 농민들의 과거에 대한 애착 집념에 양보하여 정부의 압력을 약간 완화시켜서 각 농가가 적은 땅이나마 자가용으로 소유하게 하였다.

새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국영농장이다. 여기서 일하는 농민들은 정부에 고용당한 자들로서 봉급을 받지만은 수확물의 분배는 받지 않는다.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국영농장은 사회조직의 최상의 형태이다. 궁극목표로서 그네들은 전적으로 이러한 국영농장화를 꿈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민과 농민간에 차

이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8년 이래로는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는때는 그다지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배들의 당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목표는 모든 사회를 노동자 계급이란 단일 계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도시노동자와 농촌 노동자 간에 있는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의 이해올로거나 문화 또는 기술수준을 도시민들의 그것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1968년경 까지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심하다. 이는 그 일부가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직업구성과 사회적 충성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북괴정권이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변화가 빠르지 못하다는 것과 농촌근로자들의 후진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가지 정책들이 모색되었다. 당에서는 지방 당요원들로 하여금 농민들을 재교육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자기 고장 토지에 집착하는 전통적 관념을 깨트리기 위하여 인구를 강제로 이동시켰다. 천리마운동과 사상교양강좌에 참석시키는 것도 변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조절 처방은 동시에 농민들로 하여금 과거 풍습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여간 농민들로 하여금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도록 결정적이고도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다.

농촌인구의 수준을 도시인구의 생활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 괴뢰정부가 한 일들 중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영속화시키는 것이 적지 않다. 일반 노동자와 관리직 간부들 간에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또 급속한 공업화를 강조하느라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에게는 사회적 승진의 길을 열어준 것이 또 만

보기라 하겠다. 기술자에 대하여 이치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엘리트에 속하게 하는 문호를 열어 준다는 것은 그 사회적 현대화의 현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1) 엘리트

북한에서의 새로운 엘리트 즉 상류계급은 당과 정부요원, 정 부기업체 관리자, 과학자, 고급기술자, 예술문화인 및 고급군인 들이다. 가장 높은 엘리트는 당 지도자이다. 그 대부분은 1945년 후 소련의 뒷받침을 받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중급의 엘리트는 장교, 당행정자, 적은 기업체운영자 들이다. 가장 낮은 급의 엘리트는 지방의 인민위원회의 지구책과 협동조합장이다. 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정치적 신임도, 기술능력 및 당의 적극적인 지원에다가 개인적 관련성이다.

엘리트 간의 계층과 권력에 따른 전통적 영향은 상존하다. 그래서 당의 하급간부가 상급간부에 대한 전통적 태도, 즉 과거 사회적 상급자에 대한 존대하는 태도를 답습하고 있다.

사회적인 각종 행사들은 고급 당간부에 대한 우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당의 건축생활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다.

군인에 대하여는 혁명 방호자로서의 명예를 지워주고 물질적으로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군장교는 당원이거나 당원후보자로 구성된다.

공산주의 선전과는 반판으로 여러가지 특혜들이 사회계급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 주택 배정이 그 한 예다. 즉 주택은 다섯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방 하나에 반짜리

부익으로 된 최하급 아파트먼트로 부터 정원까지 있는 독채 주택까지 있는데, 사무원이나 일반 노동자는 가장 적은 아파트먼트를 배정하고, 교사와 철리마운동단장, 도당책 및 행정책임자에게는 다음 세 등급의 주택을 배정하고, 독채로 된 주택은 최고급 당원들에게만 배정된다.

희유한 소비물자를 배정하는데도 사회적 및 정치적 계급을 기준으로 한 일정 양식에 의하여 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기본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도 어느 정도로는 각 개인의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다르게 주고 있으며, 봉급도 당의 권력층에 있는 계급에게는 특별히 후하게 지급하고 있다.

2) 사회(단체)활동 참여

각 지역 단위로 협회나 클럽을 조직하여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그 동료와 집단적 접촉을 하게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공산당은 이러한 협회 및 클럽활동을 통하여 그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함에 이용하고 있다.

1968년부터 북괴정부의 협회 또는 클럽에 대한 통제는 확대되기 시작했다. 각종의 활동이, 모든 사회계층에 그리고 모든 직종별로 중앙 및 지방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는 노조에, 농민은 농업근로자연맹에, 청년은 사회주의근로청년동맹에 가입시키고, 적십자사는 정부가 지시하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근로청년동맹은 그 규모나 영향력으로 보아 특히 주목할 만 하다. 그 회원들은 정부가 의도하는 지지, 질병에 대한 계몽선전, 선거 및 성인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협동농장, 공장 정착노동자촌 등이 현재에는 공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을 이용하여 북괴통치자들은 행정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가 옛날에는 리동(里洞)이 하던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이들 사회단체에다가 부과함으로써 북괴정권은 과거와의 단절을 이룩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연결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거의 강제적이다. 이 사회활동이 그녀들의 단체훈련과 해뇌공작의 도구방편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통제된 광장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특정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 가부를 측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에 참여함으로써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네 당에 대한 동일시 또는 충성도를 표시하고 또 어느 개인이 어떤 정치적 지위에 오르거나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도 이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동료들의 추천에 의한다. 이러한 사회단체와 개개인과의 관계가 곧 개개인과 당을 직결시키도록 하고 그 가족과 그 친척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도 이러한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개인과 정부와 직결함을 가지고 이룩되게 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가 족

1) 가족에 대한 정책

1945년에 공산주의집권 이래로 종래의 전통적인 부계대가족제도에 대치된 핵가족제도가 사회경제단위의 기본으로 되었다. 북괴정권은 개개인의 으뜸가는 충성을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1968년 경에 와서는 이미 먼 친척에 대한 상호의존은, 아직도

머릿속으로는 의무감을 느낄지언정, 실지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되고 말았다. 가족 내에서도 약간의 긴장 상태가 없지는 않은듯 한데, 그것은 특히 세대적 차이가 있는 가족원들 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념, 이를테면 가까운 친척이면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든가, 년상의 친척말에는 순종하여야 한다는 관념은 새로운 양식의 관념과 상극이 되었다. 하여간 가족의 기능은 축소되고 그 권위는 약화되었다.

옛 생활양식의 잔재, 특히 "문벌가족주의"와 봉건적 유교식 관념을 없애기 위하여 북괴정부가 채택한 것이 5개 가구로 구성된 이웃이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여기에 당기간요원 하나씩을 배치함으로써 통제와 정치적 공작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당기간요원의 영향력은 각 가정 내부의 사사로운 일에 까지도 미쳤다.

대가족제도와 문벌주의의 기간이 되는 족보를 북괴정부는 불태워 버렸다. 그리하여 대대로 내려오던 친족관계는 소멸되고 말았다. 이처럼 함으로써 북괴정권은 친척 간의 유대를 끊어 버렸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가족제도에 영향을 준 것에는 이혼(離婚)을 자유롭게 하는 법률 남녀동등권을 주는 것이 있다. 봉건적인 가부장(家父長)적 권세는 없어졌다. 1960년대 중엽 이후부터는 남녀 어느 편에서든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일처(一夫一婦)주의에 의하여, 자유선택에 의하여 결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권을 신장시켰다.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혼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북한에서의 결혼에 관한 법적 근거는 1948년에 선포된 헌법의

11, 12, 17, 22 및 23 조 들로서 전통적 가족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제 23 조 1 항 및 4 항에는 가족에 관한 종합법이 성문화하도록 되어 있다. 1950 년에 형법이 공포된 이후 부터는 가족관계도 이 형법으로 다루어 오다가(그것은 소련식) 1958 년 11 월에 처음으로 결혼에 관한 종합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많은 제목을 미완성한 상태로 남겨 두었다. 이처럼 법조문에 미완성한 상태로 두고 있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게 밝혀 줌으로써 남한 인민들로부터 반감을 살까 두려워 하였고 또 정치적 또는 사회적 반발을 두려워 한 것이다.

약혼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결혼과 부모가 주선한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중혼은 금지되어 있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특별조항은 없다. 동본동성 간의 결혼을 안된다고 하는 조항도 없다. 따라서 근친상간 또는 결혼무효 등의 사건은 판사에 의하여 "민주주의 양식"에 근거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결혼은 반드시 신고되어서 등록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유일한 법적 인정이다. 동거중인 부부만이 부부로 인정된다. 결혼한 부부는 동일한 성씨(姓)를 사용하건 각자 다른 성씨를 사용하건 자유다. 이와 같이 함은 복귀가 각자의 독립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부부는 재산을 동등하게 소유하고 운용한다. 결혼생활 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은 공동소유이고, 결혼전에 것은 각자의 것이고 또 결혼후에 상속 받은 것도 각자의 것이다. 재산 관계의 모든 쟁의는 법정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결혼 상대 결정은 부모가 주선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선택한

것을 허가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임은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식에 당 또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승인을 요청한다. 결혼식 일자에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택함으로써 노동일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차리고 신부집에서가 아니고 학교나 공장에서 거행하며, 식장의 장식은 김일성의 사진에 한하게 되어 있고 결혼식 때의 옷차림도 일상시 것 그대로이다. 지구당의 비서 또는 직장장(職場長)이 등록사무절차를 취급한다. 3일간의 휴가가 인정되지 않는 돌아온 후에 그만큼을 더 일해서 채워야 한다. 동서생활중에 있는 남녀는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하도록 권고받는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학생은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장학보조를 받는데 이는 부모에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관계 해제는 이혼 또는 한쪽의 사망으로 이루어진다. 1956년 4월 이전에는 "자유 이혼제도", 즉 쌍방 동의에 의한 이혼이 유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는 이혼부부가 너무 많아짐을 알게 되자 북괴정부는 인민법정을 통하여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법정은 시와 군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 법정은 중재 화해를 시키는 노력을 한다. 중동적인 이혼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한가지 억제책으로서 이혼신청비용을 비싸게 하였다. 그러나 반당 또는 반정부적인 이유로의 이혼제소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헐하게 하였다. 쌍방 다 재혼이 허락되나, 세번째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의 비용은 더욱 더 비싸게 하였다. 부인이 임신중에 있거나 뱃되기 이전의 애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민군 군인에 대한 이혼 제소는 할 수 없다.

대체로 양척이 다 이혼공청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1953년에 대법원 지시는 한쪽편이 적측(敵側)으로 이탈하였거나 그 생사가 불명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회갑잔치는 당에서 금지되어 있다. 당국자들은 60세된 사람은 그보다 젊은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일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회갑잔치는 복귀가 말살시키고자하는 가족에 대한 충성효도가 되겠기에 증오하는 것이다.

장례식 역시 마찬가지로 다루어지고 있다. 장례식을 치를 사람에게는 3일간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이것 역시 후에 메꾸어야 한다. 도시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장례식을 치루어 주지만 이에 참석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다. 장례식 비용을 치를 수 없는 유가족에게는 콤포넌소속 튜력을 시체운반을 위하여 빌려준다. 젊은 사람들은 당의 비판이 무서워서 장례식에 잘 참여하지를 않지만 노령자들은 종래의 습관으로 여전히 참석한다. 모든 추도 또는 축하 기념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을 회고하고 현재에 대한 불평을 교환할 기회를 마련하고 또 옛 가족적 유대를 영속시키며 식품과 불자를 낭비하며, 적의 해당 공작에 이용당한다는 이유로 억제되어 왔으나 1958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억제를 다소 완화하고 당의 선전공작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2) 여성의 지위

여성의 경제적인 동등권 부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념적인데 있지만 둘째로는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여성은 주로 경공업분야와 교육분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위원장도 약간 수 있다. 여성해방을 위하여 유

치원과 탁아소를 공장 또는 협동농장에 다수 설치하였다. 1967년에 북괴발표에 의하면 전 취업인구의 반이 여성이다. 18세 이상 55세까지의 여성은 민주여성동맹에 가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녀들의 권리를 설명해 주고 세뇌공작을 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단체에 가입시켜주는 동시에 그녀들의 남편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한다.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여성에게 정치적 직위, 특히 인민위원회 회원, 민간판사, 선전기간요원 등의 자리를 주고 있다. 여성이 그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덕"을 주입시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은 국가가 세운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자기네 아들이요 딸일 뿐 아니라 동시에 조국과 당과 전체 인민의 아들딸"임을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뇌공작이 심하니까 어떤 아이들은 자진하여 그 부모의 비행을 당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녀들의 사상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생활관을 가지고 학교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장되어 있다. 사회주의 노동청년연맹은 14세 이상 30세까지의 남자를 받아 들인다. 소년단에는 9~13세간의 소년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그녀들에게는 아버지보다는 국가의 힘이 더 큼을 주입시켜준다. 학교 교육 참여는 강제적이고 이것을 통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가족을 떠나서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주입시킴에 이 청소년 단체활동을 이용하고 있다. 즉 당이 기대하는 바는 청소년들이 그 단체활동을 통하여 부모의 권위를 무시 또는 의문하는 것을 지지받을 기회로 하게 하는 것이다.

급속한 공업화와 농촌경제 생활체제가 협동농장 중심으로 조직됨에 따라서 보다 적은 핵가족으로 되어가는 경향과 기본 경제 단위로서의 가족은 소멸되어가는 경향이 촉진되었다. 도시와 노동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는 5~6층의 현대식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그 아파트먼트 단위에 방수는 가족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농가의 건축이나 수리는 정부가 하는데, 대가족은 되도록이면 이를 분리시켜서 그 재능에 따라서 적절한 탄 집단농장이나 기타 일자리로 이주하게 한다.

어려하여 오랜 동안 지녀오던 자가보장적(自家保障)체제는 허물어지고, 정부가 불구자, 노령자 및 고아들에 대한 보장으로서 연금, 또는 보조를 하고 있다.

2. 생활 환경

가. 개 론

1968년 이래로 복귀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고민은 첫째로 한편에는 공업화 우선정책을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물자와 사회복지를 충족하게 해줌으로써 불만을 조성됨을 방지할 것인가이고, 둘째로는 증산(增産)을 위한 미끼로나, 공업기술자와 지식인들과 관료들의 충성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 소비물자가 필요한데, 그러다보니 이것이 공산주의 이념 전체가 흔들리는 자가당착적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의 경제환경과 기타 생활여건이 세세한 점까지도 중앙정권의 계획과 처방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언하면 종래의 가족중심의 경제 및 사회복지제도를 대신하여 국가 정부가 보건, 식량, 의복, 주택, 교육 및 향연까지를 주관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생활여건에 관한 자료와 정보는 극히 드물다. 그것은 주지하는 바 비밀채국주의 정책 때문이다. 그네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거의 다 자기네 선전목적에 맞춘 것이어서 그 얼마만큼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인지를 짐작하기 어렵다. 괴뢰정권이 발표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특수한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대내적으로 노동자들의 충성을 증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모든 발표 내용은 애매한 표현방법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국민복지에 관한 발표가 거의 다 어떤 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몇% 증가 또는 그 몇배라고 되어 있어서 실수 파악이 어렵다.

대체적으로 1968년경 부터는 물질적으로 일제시대 또는 그후의

어느 때보다도 약간 좋아진 것 같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인간의 자유와 노동력이 심하게 착취된 것만은 사실이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심령적인 질(質)이 그 대가의 하나로 희생되었다. 통제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란 촌시(寸時)도 없다는 것, 중산에 대한 한없는 강압, 실세없이 주입되는 이념적 세뇌공작, 모든 인간 활동을 기계처럼 규제화, 개개인의 자유결여, 오랫동안 지녀온 전통적 제도의 파괴 등이 복한 인민들의 심령적 질을 손상시키는 요건들이다.

도시민의 생활여건은 농민의 그것보다는 훨씬 높다. 그래서 북괴정권은 1961년 이래로 그 격차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 그네들 사회에서의 특권계급들이 대체로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의 차별적인 봉급, 기타 대우 및 배급제도는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확고한 계급 등차를 만들어 주고 있다. 즉 당의 간부, 고급관리, 주도적 인텔리, 군 장교 등의 신형, 양반들은 일반 노동자 농민들과는 전연 다른 수준의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다. 공표된 봉급기준만으로도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금전급여 이외의 급부의 다과가 생활수준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1967년에 한 공산당 대표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의 금전급여 이외의 급부가 일반 노동자의 그것의 1.5배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네들 지도층의 발표나 여러 정보에 의하면 그네들의 생활 수준은 1968년 경에 와서도 그네들의 가장 좋은 편을 딸지라도 아직은 이웃 만 나라의 그것보다는 빈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네들이 발표하는 매인당 국민소득은 1967년 12월에 최고인민회

의에서 발표하기를 1966년에 500원 (U.S.\$1 = ₩ 2.5)으로 되었으며 1967년에는 580원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1962년 것의 1.2배로 증가된 것이라고 하였다. 1968년에 발표하기는 1967년 것이 1946년 것의 9배고 1949년 것의 4.4배라고 하였다.

괴뢰지도자들의 성취에 대한 찬양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은 많다. 그러나 그네들은 앞날을 항상 밝게 전망하고 그 앞날의 영광을 위하여 자아부정을 하고 혁명에 참여하여 전진에 힘쓰라고 부르짖고 있다. 그네들의 선전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앞날에 대한 정부 공약 둘째는 그 동안의 정부 업적 찬양

셋째로는 현실문제인데 이 현실문제는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과연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는 확실히 알기는 힘들지마는 지도자들이 왕왕 이 문제를 중요하게 들고 나서는 것으로 보아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첫째로는 생산증가를 고취함에 역이용하고, 둘째로는 이러한 미비한 점 즉 민정을 최고지도층이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최고지도자 찬양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공약의 목표를 달성 못하였을 적에 구실로서 빈번히 사용되는 변명은 첫째가 기후불순이고 둘째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한의 침략에 대비하느라고 그렇다는 것이다.

그네들이 향토방위를 위한 조직이지마는 그것이 북한 인민들의 일상생활 여건에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는 소위 생활권(活生圈) 조직이다. 이 생활권 조직은 1967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직된 것이

다. 이것은 매 시, 매 읍면, 매 공장 단위로 조직되어서 일단 유사시에 외부와의 소통이 두절되어 고립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에 목적을 둔 국방과 지역사회 경제를 연결시킨 것이다.

나. 공약과 업적

김일성은 1968년에 인민들이 생활 걱정으로 부터 해방되고, 길거리에서 거지가 없어졌다고 하였으나, 동시에, 가장 주요한 부분만이 해결되었을 뿐이고, 아직도 생활을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수증하였다.

북괴정부가 1961년에 한 공약으로서 1964년까지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300 만톤의 쌀
200,000 톤의 유류
3억 3천만 마의 포목
600,000 채의 근대 주택 들이다.

그러나 1968년 10월호 민주조선 사설에 의하면 상기 공약이 1968년까지에도 성취되지는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정부 관리에게 그 대책을 촉구하였다.

1968년 부수상 김 일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61-1965년 동안에 생활여건 향상 목적으로 교육 문화 주택 공공시설 상역 사회복지 등에 10억원을 사용하였다는데 그것은 매해 2억원을 사용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1963년도 북괴 정부 총 예산의 6%에 불과한 것이다. 개인 기업이 없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분야의 지출은 거의 없이 정부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북한에서 이 모든 비용이 북괴 정부 총 예산의 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의 적은 비율이다.

계속적으로 북괴 수상 또는 부수상이 공산당 대회에서 성명하는 것은 일용생활필수품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급하고 부족함을 역설하고 책임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자본주의사상으로 부터 탈피하지 못한 탓으로 공박하고 있다.

1964년까지에 공약한대로 풍족한 해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해 9월에 부수상 김광협에 의하여 성명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네 생산품의 질이 높지 못하고 또 우리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분량에도 훨씬 부족하다"고.

1968년에 김일성이 당회의에서 말하기를 식량과 의복의 량과 질을 향상함에 소기의 전진이 없었음을 불만으로 표시하였다. 그는 "우리들은 인민의 물질적 생활수준과 문화생활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용되어 있다.

김일성이 것처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호소를 1967년 5월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석상에서도 또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우리 노동자와 당기간요원이 생활필수품의 종류를 늘이고 그 질은 올리기 위하여 과감하고도 굳은 결의를 하느냐 않느냐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즉시로 그네들 생활필수품의 질을 세계수준으로 올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김일성은 또 말하기를 보다 많은 식품과 의복 특히 겨울옷이 더 필요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분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식당 기타 공공서비스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김일성 수상의 권고에 뒤이어서 제1부수상 김 일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무역담당 당지도적 간부들의 무책임한 근무태도를 비판하고, 소비물자 요구량에 대한 지역별, 계절별 및 생활분야별 연구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는 여러 생필물자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부족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팔리지않고 사장되어 있음은 국가에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특히 채소, 육류, 계란 및 식용육류가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수도에서 그러한가 하면 창고에는 많이 사장되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농촌지역을 위하여 가구용품, 의복, 신발, 옷장, 재봉틀, 라디오, 텔레비존 수신기, 시계 및 비누등을 많이 증가 시켜야 겠다고 지시하였다.

북괴정권이 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 이행에 실패하였음을 자인하는 성명은 부수상 김 일이 1968년 4월에 한 바 있다. 당 모임에서 그는 각부장관들과 고급간부직원들이 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우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복지사업 향상에 하등의 진전이 없는 것은 당의 지도적 간부들의 관심이 결여하고 책임성있게 일을 조직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내부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항상 북한에서는 생활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함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 보건 위생

단백질, 칼슘, 각종 비타민 특히 A¹, B¹, B² 등이 결핍한 식사를 불규칙하게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1945년부터 1960년 간에 평균수명이 20년 연장되었고 사망율도 반감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명 내용은 그 후에도 별로 변함

이 없이 1967년도에 김일성 수상이 한 공식연설에도 계속된 바 있다. 또 영아사망율이 동일 기간중에 3/4으로 감소되었다고 하나 출생 1,000에 대하여 얼마라는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식발표에는 기생충감염, 결핵 기타 각종 전염병 등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하는 하등의 발표가 없다. 이러한 질병들은 6.25 동란 중에 오히려 악화되어서 북한 인민들의 체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1968년도에 공산당 방송은 1966년도의 공중 보건예산은 1952년 것의 13.5배였다고 자랑하였다. 1952년 것과 비교하면 1967년도 전반기에 예방 및 치료 설비를 5.8배로 의사를 21.6배로 병상수를 5.3배로 증가시켰다고 북괴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소련식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보건 위생사업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정부 주장에 의하면 누구나가 다 의료를 무료로 받고 있으며, 리(里)마다 하나씩의 위생(진료)소가 있고 또는 큰 시에 병원시설을 가지고 있다. 리에 있는 위생(진료)소에는 구급처치용 의약품과 의생 및 간호원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다. 매 군마다 3~4명의 인턴과 1~3명의 의사가 있는 인민병원이 있다. 여기서서는 간단한 수술만을 할 수 있다.

1) 연 력

전통적으로는 의료문제는 가족내의 문제였고 또 귀신에 대한 미신이 농민들에게는 농후하게 젖어 있었다. 공산당은 현대 의학과 전통적 의료의 장점을 결부시켜서 겸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의학의 유용성도 주장하였다. 그네들은 경낙설 발견을 큰 자랑거리로 삼고 선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의학은 생약과 침을 사용하는데 그네들은 이것을 현대과

학으로 이론화함으로써 현대의학에 응용코자 한다. 그네들은 평양에 동의학 중앙병원을 설치하였고 몇몇 도에 동의학병원을 설치하였으며, 일반 병원에도 동의학과가 있고, 평양의과대학과 기타 대학에도 동의학과 담당 교직원을 두고 있다. 보건성에서는 9,000종의 방문을 수집하여 1965년에 발간하였다.

2) 조 직

보건 위생 및 의료정책을 집행하는 권한은 보건성(保健省)에 부여되었다. 1967년에 보건성에는 6개국을 두었다. 그것은 기획, 의정, 재무, 방역, 금역 및 약제기구 생산이다. 여기다가 의학연구원, 국립병원, 보건요원훈련소가 보건성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국민의료보험이 설치되고 모든 병원과 의학교육은 국가가 경영하며 보건성의 관하에 속한다. 의사를 위시한 모든 보건요원도 국가공무원이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원, 기타 보건요원에 대한 통계수자가 잘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1964년의 해외선전자료에 의하면 의사와 의생의 수는 1963년에 있어서는 1946년 것의 18배로 증가되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공식발표에 의하면 1964년에 있어서의 의사의 수를 22,706라고 하고, 이는 주민 10,000에 의사 19명의 비라고 하였다. 그 후에도 증가되었으나 1967년 12월에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의료사업은 개선할 여지가 많고, 의사의 질도 향상되어야 하고, 항생제 기타 약품의 생산을 증가해야 겠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 부수상 김 일 역시 "의약품의 생산량의 증가와 그 종류의 증가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였다.

의사 수요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복귀는 보통 의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단기간 동안만 훈련을 받는 의생(펠셀)과 보건보조

요원들을 대량 양성해 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에는 두 가지 급이 있다. 의료요원은 4개 의과대학, 즉 평양, 청진, 함흥 및 해주 의과대학에서 양성되는데 매해 도합 1,000 명이 졸업한다. 이 이외에 단기간에 의생을 양성하는 의학교 수가 10개 이상이며, 여성에게 간호교육을 하는 학교가 따로 있다.

예방의학을 강조하여 각 시구, 읍면 및 공장 마다 방역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은 각기 관내의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책임을 지고 위생조건에 관한 감독을 한다. 의사와 간호원으로 구성된 팀이 부락을 순방하며 위생에 관한 강습을 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원에 대한 대우는 일반 도시노동자나 농민과 대동소이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네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천리마운동에 의하여 치료한 환자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점수제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다. 의사들은 보고서내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은 의사가 경증만을 많은 수 취취급함으로써 그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노동자가 식권(食券)을 박탈 당하지 않고 결근하려면 의사의 증명서 발부를 요하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매 5일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장기결근을 위하여는 교위층의 의료당국자의 승인을 요한다. 환자는 먼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진료소에 가야하고 다음으로 시 군립병원을 거쳐야만 도립병원으로 갈 수 있다. 이환중의 노동자는 평시 봉급의 40-60%를 지급받는다 고 북괴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는 1945년에 설치되었다. 이 제도에 의하여 모든

공무원과 공장 노동자와 광산노동자들은 무료로 의료를 받고, 그 가족들은 의료비의 60%를 이 보험이 물어준다. 집단농장에 소속된 농민은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측이 각기 수입의 1%씩을 한해의 7개월간 보험료로 물고 그 나머지는 고용주측이 부담하는데 그것은 임금총액의 5~12%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섯가지 종류의 환자는 그 고용관계나 가족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무료로 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신병, 3세까지의 어린이, 임산부, 장학생 및 전염병 환자이다.

1962년에 한 정부보고에 의하면 국공병원수는 167개였다. 만 보고에 의하면 1964년의 병원수는 1946년 것의 6.29배로 증가되었다고 하였으며, 총 침상수는 24배로 늘었다고 하였다. 1964년에 국가기획위원회 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64년 전반 기까지에 그 전해 동일시기보다도 병원과 진료소 수가 3% 증가되고 병상수가 6%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피뢰정권은 정신과환자, 아동질환 및 결핵 등 환자를 위한 특수병원을 자랑하고 있다. 각종의 요양원 및 휴양소도 보건성이 경영하고 있다.

큰 병원에 있는 의료기구의 대부분은 1945년에 일제가 남기고 간것 아니면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제공된 것들로서 그 대부분이 낡은 것들이다. 큰 도립병원들은 거의 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의하여 건립된 것이다. 도립병원과 큰공장에만 방사선시설이 있다. 대부분의 시병원은 중앙정부 자금으로 지었고, 농촌지역의 진료소는 집단농장이 낸 자금으로 지어졌다.

두개의 큰 제약공장이 있는데 그 하나는 선천에 있고 만 하나는 홍남에 있다. 그 외에 적은 규모의 제약공장이 주요 공업지

대에 산재해 있다. 의약이 대단히 고가이라서 보통 가정에서는 지역에 있는 진료소나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을 쓰는 수 밖에 없다. 각 군에 하나씩의 "인민약국"이 있는데 여기에도 간단한 매약정도만 있다.

3) 환경위생

(가) 상수공급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물의 공급은 대체로 풍부한 것 같다. 그러나 한발이 심할 경우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아직도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하천 수 우물들과 샘물 등은 거의 다 오염을 면치 못하는 상태에 있다.

1970년 11월에 있었던 북괴노동당 5차 당대회에서 6개년 계획 기간에 이 소재지까지 수도시설을 목표하고 있으나 현재의 실정은 군소재지의 30% 정도는 아직도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공공우물은 뚜껑을 덮고 잘 관리되어 있다.

(나) 오물처리

기백년을 두고 분뇨를 비료로 사용해 왔다. 이 오물처리에 관하여 공산정권이 언급한 바는 거의 없지만 화학비료의 공급이 충분치 못한 처지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분뇨사용은 여전히 계속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각종의 기생충과 기타 질환이 만연될 것이다. 수세식변소는 대도시에도 거의 없고, 다만 소수의 소화조변소가 있을 따름이고 하수처리시설도 없다. 현대식 아파아트먼트에는 욕탕이 있으나 물이 잘 보급되지 못하여 그것을 사용코자하는 주부는 물을 길어올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아파아트먼트의 각 층에 변소가 하나씩 있기는 하지만 물이 모자라

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뒤 곁에 따로 지은 목조변소를 사용하는데 그나마도 100명에 하나꼴로 사용한다.

(다) 곤충과 쥐

곤충과 쥐는 각종 질병원을 매개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많았다. 그러나 보건위생사업으로 곤충과 쥐의 구제 박멸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4) 일반 질병

정부는 사망율과 이병율에 관한 자세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옛적부터 결핵, 나병, 하기뇌염, 소아마비 등이 주요 질환이였었고, 장티프스와 디프테리아도 흔하였다. 기생충의 감염은 보편적이고 소화기계 각종 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되어 있다. 세가지 종류의 티프스도 있고 요즘도 천연두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콜레라는 없는 것 같으나 말라리아는 아직도 많은 것 같고, 성병에 관하여는 아는 바 없다.

5) 전염병 관리

1948년에 보건성이 설치되자마자 즉시로 시작된 것이 광범한 면역사업이었다. 천연두에 대한 종두, 장티프스, 파리티프스 및 콜레라에 대하여서는 강제적으로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고 각자가 그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수시로 가두 검열을 하고 유행시에는 추가주사를 한다. 그해늘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하기뇌염은 1962년에 개발된 유효한 백신 사용과 모기 구제로써 완전히 없었다고 한다. 예방접종사업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는 의료원과 백신보급의 원활 여하로 좌우되는 것인데 이 상태는 각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평양시내에서는 방역요원들이 전

시내를 각 구에 따로 조직적으로 기록 검열을 하여 접종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간 벽지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법에 의하여 급성전염환자는 보건당국에 신고되어서 격리 수용 치료된다. 각 시, 군, 면에 전염병관리소가 있어서 젊은 의사가 소장이다. 주기적으로 환자 적발일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보안관, 지구보건원, 지구서기로 구성된 방역반이 가가호호를 검사하고 신고되지 않은 환자를 적발한다.

라. 공공 사회복지

공산주의 국가제도 내에서는 국가가 부모 즉 아버지 역할을 대행하는 것은 비단 의료에 한한 것은 아니다. 잠시동안 일할 능력을 상실한 자와 임산부, 장래, 사고로 말미암아 또는 직업상의 병으로 인하여 영구불구로 된 자에게는 급부를 공여한다. 이들 급부는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론적으로는 노령연금제도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이 실지로 실시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말이 없다. 1964년부터 각 도에 하나씩의 양노원은 노동성 산하에 있게 되어있다. 교육은 무료로 강제적이라고 하나 각 가정의 가계지출을 보면 교육비로서 상당한 지출이 있는 것은 이해가 곤란하다.

1956년 2월에 그네들 각의는 사회보험 급부율을 "민족해방,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 예술, 기타 사회 분야에서 특히 국가적 공로가 많은 자에게와 그 부양가족"에게 대하여 특별배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로서 노령,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무능력하게

된자의 최종월 임금을 가의 임금까지 합산한 것의 100%를 지급 하라는 것이었다. 유공자의 부양을 요하는 유가족에게 지불할 액 수와 장례급부도 지정하여 주고 있다. 더러는 이러한 규정에 의 거하여 급부가 지급되나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서 지정한 100%보다 는 적은 율로 급부를 받는것 같다. 일반 임금이 각 가정의 최 저요구도 충족될까 말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구로 된 노동자들 은 의료를 무료로 받는다 할지라도 급부금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마. 영양, 의복 및 주택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전쟁과 사회주의 제도로의 전환 때문에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농촌인구가 주었던 북한은 도시화로 급속하 게 전환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공업화를 지향하는 이념에 맞추어 갔다. 과거에는 최저생존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1968년 경에 북한을 찾아간 외부인사 들의 눈에는 북한 사람들이 그 옛날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으로 보일 것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생활 필수 소 모품들의 수량이 적고 그 질이 좋지않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대개가 느끼는 불만이다. 이와같은 불만이 있음은 공산주의지도자 들의 성명을 통하여 가히 짐작된다.

식량이 그 한 예다. 정부 발표는 식량생산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나 수수 같은 것은 수출까지 한다고 하나, 이 보도만 가지고는 오관하기가 쉬운 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도 좋아하는 쌀이 식량 총생산량의 반에 불과하다. 1964년까지 는 쌀이 총생산식량의 2/3로 되게 하겠다고 해농교도 기실은

1967년에 와서도 쌀이 겨우 총 식량 생산량의 반에 불과하다. 또 자급자족한다는 것도 의심되는 것은 1966년 7월부터 1967년 6월 간에 북한은 캐나다로부터 140만부셀의 밀을 수입한 사실이다. 또 지도층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보다 많은 우육, 닭고기, 생선, 채소, 기타 식품을 생산하라는 점이다.

생활소모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가 심히 염려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러한 것을 다루기 위한 정부조직기구가 생겼음에 반영된다. 즉 1967년 2월에 북괴정부는 경공업성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직물제시성과 식품 및 일용품자를 취급하는 성을 설치하였다.

북한으로 부터 탈출해온 동포들이 발표하는 견해도 북한에는 생활필수소비품이 부족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점이 자유가 없다는 점과 아울러 북한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영국인 또는 일본인 상인 또는 외교관 소식통에 의하면 소비물자 이블테면 자전거나 라디오 등의 량이 점차로 증가되어 가고는 있다고 하며, 혹자는 북한의 생활수준이 중공의 그것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다고 하였다.

1) 식 품

도시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식품배급을 주고는 있지만 영양면으로 보아서 농민이 더 나은 편일지도 모르는 것이, 비록 자가 소비용으로 두어둘 수 있는 분량에는 제한이 심할지라도 자기네 식품을 자기네가 생산하기 때문이다. 1958년에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개인 채마밭이나 농기구를 다 몰수하고 말았으나 1960년에 와서는 그것을 되돌려 주었는데, 그것은 증산에 대한 욕구를 돌구어주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과일나무, 닭,

토끼 기타 가축을 개인적으로 기르고 있고 당국은 그것을 권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1960년 발간된 교본에는 농민들로 하여금 개 같은 가축과 채소를 보다 많이 기르고 가꾸어서 그것을 농민 시장에다가 팔아서 새 집을 짓는 돈을 만들라고 권장하였다.

1947년 10월부터 일부(공무원) 식량배급을 실시하기 시작하다가, 차차 배급대상 범위를 전체적인 노동자 사무원에게 배급이 시작된 것은 1958년 8월 이후였다. 이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배급제였다. 즉 식량배급을 통하여 노동자 사무원에게 작업능율을 올리는 방책으로 이용하였다. 국가 과제를 초과달성할 경우에는 식량을 증배하고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는 식량을 배급하지 않는다. 개인 상업업자가 직접 농민으로 부터 식량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업자도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제급에 따른 불평등 배급제가 1965년까지 실시되어 오다가 사회적인 불평이 너무 심하여 이를 개정하여 비교적 평등하게 하였다. 이를테면 1965년 이전에는 고급관리와 당간부에게는 전량 백미일 뿐 아니라 하루 1인당 800 ~ 1,000g 씩이나 중앙공급대상으로 주던 것이 다음과 같은 현행 기준량으로 개정되었다.

식량 분배 기준

배 급 대 상	배 급 량	비 고
중노동자 및 유해노동자	800 ~ 1,000 g	백미 : 잡곡 5 : 5
일 반 노 동 자	700	
일 반 사 무 원	700	평양시경우에만 3 : 7
고급관리, 당간부	700	
부 양 가 축	300	보충미 100 g
인민학교 아동	400	"

배 급 대 상	배 급 량	비 고
기술학교학생	500	보충미 100 g
고등기술학교 대학생	700	"
일반군인	800	
유 아	150	
환 자	600	
사회안전원	800	

식량배급 가격은 쌀이 1kg에 8전, 옥수수 4~5전, 좁쌀 5전
이므로 1인당 1개월분 식량대는 얼마되지 않아서 보통 수입의
4% 정도이다.

식량배급소는 2개동에 1개소씩 분포되어 있고 큰 공장과 기업
소는 자체내에서 배급을 실시하고 있다. 배급카드가 있어야 하
며 이는 각 가정 단위로 되어 있다. 배급 기일은 한달에 2회
이다. 배급기일 이전에는 미리 탈수는 없게 되어 있고 1965년
이전에 있던 특배는 거의 다 없어졌다. 가정생활에서 가족끼리
매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동으로 밥만을 지어주는 소위 밥
공장이 있어서 식량카드를 공장에 맡기고 약간의 요금을 주면
밥만 지어서 주는 곳이 있는데, 1970년 11월에 있었던 5차 당대
회에서는 앞으로 6개년 계획기간에 밥공장을 대폭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부식까지 다 만들어 주는 소위 가족식당도 많이 이
용되고 있다.

술은 일반적으로 소주와 같은 독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가
격은 비싸서 많이 먹을 수는 없다. 소주는 도토리를 주원료로
한 것이며, 북한에는 곡주가 없다. 특이한 것은 북한에는 막걸리

가 없다. 맥주나 생맥주는 사무직장에서 애용되고 있다. 술취하면 비판받는다.

담배는 한때 배급제를 실시하다가 1956~7년경부터 자유판매이다. 금연운동은 별리지 않고 있다.

간장과 된장은 일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양조할 수 없다. 농촌에서도 결산분배 때에 간장 된장의 원료인 콩만은 전량을 국가가 수매하고 일반 배급에서도 콩만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간장 된장은 시 또는 군 단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식료품공장에서 양조하여 식료품상점에 공급하게 된다. 고추장은 공장에서도 만들지 않으므로 구할 수 없고 고추장은 모르고 산다.

2) 의복

의복의 형은 재래식 것이 대부분이나 레닌모자에다가 모택동복장, 학생복, 작업복이 많아졌다. 도시지역에 남성은 양복형이 주고, 여성은 한복 치마저고리인데 치마가 약간 짧은 편이다. 여성의 95%는 한복이다. 의복배급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현저한 차별을 나타내고 있다. 고급관리와 외국으로 가는 자 또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자에게는 일본, 홍콩, 중공, 소련 등으로 부터 수입한 감으로 만든 것을 허락한다. 합성섬유류는 대단히 비싸다. 이플테면 나이론양말은 털양말의 3배로 비싸다.

의복배급량에도 계급별 차이가 있다. 즉 고급관리는 무제한이고 무료이며, 2~3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복 1년에 한벌, 동복 2년에 한벌, 오바는 3년에 한벌이고, 4급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오바는 배정되지 않는다. 털 내복은 극히 비싸게 해놓고 못입는 방향으로 한것과 다름없다. 즉 털내복 하나 사려면 몇 주일 분

의 봉급이 다 떨어진다. 백색의 샴시는 분량이 극히 적다. 작업복만은 무료배급이다.

보석, 핸드백, 화장품 등은 고급관리의 부인과 북송교포에게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3) 주택

6·25 동란으로 인하여 많은 주택이 파괴 소각되었는데 그것은 약 33,480,000 평방야드로 추산한다. 그 후 10년간에 35,800,000 평방야드를 건축하였다고 하며 그 반은 농촌에 남겨지 반은 도시에 지었다 한다.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1963 - 66년 사이에 12,200,000 평방야드 건평에 해당되는 주택을 지었다고 하며, 또 하나의 자랑은 1964년중에 평양에다가 409,032 평방야드의 주택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그네들의 7개년 계획은 1,200,000 가구의 주택을 반은 도시에 반을 군지역에 짓겠다고 하였다. 1967년에 그네들이 말하기를 멀지않아 국민의 반이 1961년 이후에 지은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네들이 말하기를 초가는 없애고 벽돌에 기와를 이은 집으로 하겠다고.

개인 가옥의 점유권은 인정되어 있으나 세를 놓거나 가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매매할 권리는 있으나 사실상 매매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 향토색이나 가족주의사상을 없애기 위하여, 또 특히 월남가족을 포함한 소위 반동가족들의 처치를 위하여 모든 주민들을 혼잡 이주시켰다. 이때에 강제로 이주되는 개인가옥 소유자가 가옥을 매도하려고 하여도 사출 자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또

소유권보존을 위한 재산등기제도도 없다.

1955년부터 복귀는 전략적 고려에 의하여 해안선 부근의 도시 건설은 뒤로 미루고 내륙지방부터 착수하였다. 다만 함흥시만은 동독에서 들어온 기술자와 건축 자재로 일찍 건설하였다. 1957년부터는 해안선에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촌은 1961년에 들어서 부터 비로소 "농촌건설대"라는 명목으로 200~300명씩의 건설노동단을 조직하여 가장 피해가 심했던 마을과 도로나 철도연변 마을부터 시작하였다. 주택건설은 개인의 설계에 의함이 아니고 일률적인 설계에 의한 것으로 도시에는 아파아트, 농촌에는 집단식 주택(한 채에 2~3가구씩 사는)을 지었다. 처음부터 주택은 농경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964년 8월 평안북도 삭주군당 확대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면 ① 농촌을 평야지대에 노출시켜서 건축한 것은 전적으로 잘 못 되었다. ② 자연반항공(自然反航空) 위장이 될 수 있는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3~4호씩 분조별로 분산하여 건축할 것. ③ 후방기지의 1개조는 전면지대 1개도를 담당하여 만약의 경우 전면지대 인구를 후방기지로 이주시켜도 능히 먹여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이에 따라, 평야지대에 건축하고 있던 공장들은 갑자기 헐리고 산간지대로 옮겨 건축되었으며 농촌주택도 산간지역으로 옮겨짓게 되었다. 1960년을 기점으로 하여 공장 및 기업소 소유의 가옥까지도 국영가옥으로 환원조치되어서 일체를 도·시·군 인민위원회 건설위원회 산하에 있는 "주택관리소"에서 일괄 관리 배분한다. 독신자의 경우 직장에 부설된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주택관리소에 신청하여 배분한다.

배분되는 주택은 언립 주택이거나 아파아트거나 방 두개를 초과

할 수 없다. 방 수의 결정은 가족의 수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직계가족인 경우는 가족수가 좀 많아도 방 1개가 배당되고, 시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라면 방 둘이 배정되는 것이 그 예다.

주택에는 5종의 급이 있는데 가장 낮은 급은 방(9척×12척) 하나에 부엌 반칸짜리고, 4등급으로 올라가면 온돌방 둘에 마루 하나, 부엌, 창고, 욕탕에 변소까지 붙어 있고 5등급에서는 정원까지 딸린 독채의 가옥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급의 주거 중에서 어느 급 것으로 배정 받느냐는 3급이상서 부터는 가족수에 달리지 않고 주로 계급에 따라서 정해진다.

주택의 수리나 관리는 일체 주택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구들을 고친다거나 기와를 고치는 것까지도 일체 관리소에서 하고 있다. 임주자는 월세를 내고 있으며 월세는 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그 이유는 수도료와 전기료가 집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다 계량기가 없다. 전기료의 89%와 연료의 반액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나 집세는 일반 가정 수입의 3%에 해당되며, 농촌에서는 집단농장 수입의 10~25%를 건축비에 투자하고 있다.

1967년까지 농촌의 98.2%가 전화(電化)되고 농가의 86.1%가 전화되었다고 하나 전기사용의 이와 같은 확대로 도시의 불이 어두어지고 가정의 전기는 40와트를 넘지 못하며 한 가정에 두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변소는 단독 가옥은 본 건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서 별도로 지어져 있고 구아파트의 경우도 밖에 별도로 변소가 설치되어 있다. 수세식 변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수도용 파이프의

생산이 지극히 부족하고 또 양수기의 생산도 부족한 때문이다.

바. 공공 편의 시설

호텔, 식당, 여관, 미장원, 공중욕탕, 양복점, 구두수선소, 세탁소 등 다. 국영이다. 식당은 1958년부터 다 국영화되었다. 평양에 외국인 전용의 호텔이 하나 있고, 각 도청소재지에 4~5개의 여관이 있으며, 각 군에 1~2개의 여관이 있고 면소재지에 여인숙이 하나 정도 있다. 호텔, 여관, 여인숙 등에 숙박하려는 손님은 일정 4간(저녁 5-7시사이)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제출이 지구 공안원(사회안전원)의 서류심사를 받고 또 면접을 받아야 하며, 지참한 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식사 시간 역시 일정하며 종을 울림으로써 식사시간임을 알려준다. 독방은 거의 주지 않고 한 방에 두사람 이상 합숙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식당은 낮 12시에 열고 저녁 일찍 닫는다. 24시간 여는 식당은 평양에 하나 있는데 이는 출장공무원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메뉴는 간단하며 밥은 흰쌀밥, 잡곡섞인밥, 그리고 국수나 면 같은 세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고기나 계란은 대단히 비싸게 받는다.

이발관에는 대개 여자이발사가 하루 20명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세탁소는 독신 남자나 고급관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미용원은 고급 관리 부인만이 이용할 수 있다.

사. 소비 양식

북한에서는 정부가 모든 상품을 할당 배정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고,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식량 기타의 배급내용과 분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양식이나 소비경향은 일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년년히 달라지는 것이다.

북괴가 선전하는 것은 대부분의 직세(直稅)를 없앴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정부에 공납하던 것도 1966년 이래로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부의 세입은 식량을 사들여서 파는 것을 포함하는 정부직영의 기업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의존하고 있다. 환언하면 정부 세입원은 주로 간세(間稅)이다. 거의 모든 사업을 정부가 하고 사기업(私企業)은 없기 때문에 이 간세가 막대할 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의 관료적 인건비를 내포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이득이 적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비들이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1967~68년도 예산에는 그 28%가 소득세였는데 1967~1968년 예산에서는 겨우 2%만이 소득세였다고 한다. 또 동일 소식통에 의하면 1966년부터는 농민에게는 전혀 세금을 받지 않으며, 1968년부터는 전 노동자에게 세금을 완전 면제토록 하였다고 한다.

식품이나 일용물자를 일한 분량과 질에 대한 보수로 준다는 것은 오래된 정책이다. 1967년 12월에 김일성은 능력에 따른 이와 같은 분배제도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식량과 물자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필요한 것이라 하였다.

자진 저축을 애국적 행위라 하고 여러가지 내핍과 희생을 빈번히 강조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간에 차질을 메꾸기 위한 것이며, 일반 물가는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되어 있지만 사치품에 대하여

는 엄청나게 비싸거나 물자가 없거나이다. 1967년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을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업생산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마저도 임금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기는 하나 기본생활비는 형편 없이 싸다고 했다.

1960 ~ 1970년대 중엽에 있어서의 월급은

장 관 급	270 - 280 원
의 사	85 - 120 원
간 호 원	45 - 70 원
일반노동자(남성)	40 - 45 원
일반여성노무자	30 - 35 원이었다.

그러므로 일반 노무자 부부 둘이 받는 임금 합계는 월 73원 평균에 약간의 현금 이외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된다. 1966년 경에 자녀 셋 중 하나는 중학생, 다름이 국민학교 아동이고 나머지가 영아인 경우의 부부 다섯식구의 한달 동안 생활비는 최소한

식량에	22.32 원
연료	12.50 원
의복	17.76 원
교육	2.47 원
문화	3.20 원
기타	14.75 원으로 도합 73 원은 필요하다.

농민의 수입은 표현이 좀 어렵다. 농민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조를 통하여 자기가 일한 량과 질에 따라 매겨지는 점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데, 이 보수는 현금과 현물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사사로운 물물교환은 명색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실은 감시통제가 엄하다. 따라서 모든 육구의 충족은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을 통하여 배급제도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1966년에 그네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형적인 이소개지의 백화점에는 505종의 물품이 저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외의 특별주문도 받는다고 하였다. 이 백화점의 관리인은 각 가정의 가족 성명, 성별, 연령 및 향후 1년간의 물품요구량을 기입한 기록부를 가지고 있다. 이 카아드 즉 보고서는 매년초에 작성되는 것이며 거기에는 필요한 물품의 분량만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필요한 것까지 기입하여야 한다. 식량의 배급은 매월 한두 차례로 나누어서 탄다.

1960~1969년간의 일용품 가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960년대의 북한의 일용품 가격

식품, 담배 및 음료

미 곡	3 - 3.5 전 / 1b
간 장	18 전 / quart
된 장	9 전 / 1b
설 탕	1.5 전 / 1b
국 수	50-70 전 / 그릇
개장국	1 원 / 그릇
쇠고기	2.5 원 / 1b
돼지고기	2-3 원 / 1b
닭	5 원 / 마리
개	40 원 / 마리
토끼	5-10 원 / 마리
계란	2-3 원 / 줄

오리알	1 원 / 10 개
맥 주	55 전 / 20 Ounces
인삼주	5-7 원 / Pint
우 유	20 전 / 10 Ounces
담 배	10 전 ~ 1 원 / 갑

의 류

모직양복	100 ~ 250 원 / 벌
동복한복	30 ~ 38 원 / 벌
샤 쓰	15 ~ 25 원 / 벌
넥타이 (국산)	2 ~ 5 원 / 개
면양말	60 전 ~ 1.2 원 / 켤레
모양말	2 ~ 3 원 / 켤레
나이론양말	6 ~ 7 원 / 켤레
여자나이론스타킹	4 ~ 15 원 / 켤레
가죽장갑	10 원 / 켤레
남자모자 (챙이 달린)	3 - 5 원 / 개
남자웨터 (수입품)	70-90 원 / 벌
여자한복 (벨벳트)	250 원 / 벌
오바코트 (혼방)	100-120 원 / 벌
면직물	2.5 원 / yard = 83 전 / 마
견직물	1.4-45 원 / yard = 4.7 ~ 15 원 / 마
모직물 (내국산)	18-72 원 / yard = 6-24 원 / 마
" (수입품)	27-108 원 / yard = 9-36 원 / 마
오바코트직물 (모직, 일제)	36-135 원 / yard = 12-45 원 / 마
가죽구두	30-35 원 / 켤레

운동화	4.3 원 / 켈레
학교유니폼	20-30 원 / 벌
손목시계 (스위스제, 17 석)	200-300 원 / 개
" (소련제, 17 석)	150-200 원 / 개
" (일제, 17 석)	200-300 원 / 개
라디오 (내국산)	150 원 / 개
" (수입품)	200 원 / 개
자전거 (내국산)	150 원 - 200 원
" (일제)	300-400 원
재봉틀 (내국산)	240 원
빨래비누	50 전 - 1 원 / 개
세수 "	1.2-1.5 원 / 개
치약	70 전 - 1 원 / 개
만년필 (내국산)	3 - 7 원 / 개
연필	2 전 / 개
이발	30-70 전
목욕 (공중탕)	20 전
영화관입장료 (보통)	20-30 전
" (1 등석)	1.5 원 - 2 원
연극 및 바레입장료 (평양)	3.5 원
신문구독	1.2 원 / 개월

고급당원과 고급공무원만을 위하여 특별배급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쌀, 기타 수입된 식품, 기타 사치품까지도 특별 가격으로 무제한 살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육류배급을 일년에 한두번 -국경일에-가외의 쌀과 더불어 타게 된다. 그 육류는 대체로 돼지고기인 경우가 많고 소고기는 극히 드물다. 수산물도 공업생산물 수입한 대가를 치루기 위하여 소련이나 중공으로 수출된다.

채소 배급은 비교적 풍부하다.

아. 여가활동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당의 이념에 따라오도록 세뇌하기 위하여는 여가활동에 관한 광범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였다. 한없이 많아만 지는 증산 목표량, 학습, 교양, 자습과정, 자원 봉사 작업 등으로 개개인이 자유로히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별로 남지 않는다. 만약에 남아돌아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는 국가를 위하여 어떤 봉사하는 일을 해야만 하고 왕왕 국경 공휴일까지도 무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대체로 일이 끝난 후에는 어떤 학습교양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다. 하루 8 시간의 노동에 1년간의 시간외근무 최대한계를 250 시간으로 해놓았지만은 비공산주의자의 보고에 의하면 하루 14 시간 노동이 도시노동자의 경우는 예사고, 농촌 노동자의 경우는 그 이상이 예사라고 하였다. 그 결과로 국민들은 그야말로 지치고 지쳐있다.

노동시간 이외의 활동은 다 동맹당, 또는 정부에 의하여 감시를 받는다. 자진 무보수 봉사노동을 포함한 일과노동이 끝나자마자 노동자들은 세뇌학습교양을 위한 강의, 회합, 행사,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일요일 아침 역시 군사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휴양시설은 제한되어 있다.

1966년에 추정하기를 한 모델 협동농장은 750가구의 농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5개의 당정책연구회가 있고 회원수가 600명이라 하였다. 이 모임들은 59명의 선동원과 7명의 대화지도책에 의하여 지도를 받고 있었다. 이 협동농장에는 6개의 조선노동당사(史) 학습교실 기타 활동을 가지고 있고, 가끔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도원들이 주기적으로 파송된다.

1) 공 휴 일

명목상으로는 한달에 이들의 일요일을 휴식함이 일반 노동자에게는 허용되어 있다고 하며, 당간부와 지식인 간부들에게는 일요일은 전부 쉴 수 있게 되어있다 한다. 농민들에게는 사실상 청규적인 일요일휴식은 없다. 이론상으로는 1년에 2주일간의 유보수휴가가 있지만 실지로는 천리마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남길려면 이 휴가를 취하지 말고 일해야 한다.

1년에 나흘 동안의 국경일에다가 많은 기념일이 무수히 있어서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 이 무수히 많은 기념일의 어느 것이 공휴일로 하느냐 않느냐는 지방당국자가 생산과정에 과히 지장이 없다고 판정 여부에 달렸다. 그러나 실지로는 공휴일로 삼고 노는 날은 거의 없다.

2) 체 육

북괴정부는 전국민에게 체육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매일의 일과는 이른 아침에 연식체조와 달음박질로 시작된다. 또 작업교체시에도 운동과 냉수욕을 하도록 권장되어 있다. 젊은 청소년에게는 국제 체육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다. 선전에 의하면 1947년에 4,000개의 체육회가 조직되었고

180,000 명의 회원을 가지게 되었다 한다. 체육과가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내에 설치되었다. 마스게임과 연식체조는 전국적으로 퍼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스포츠와 체육은 소년단원들에게 미제와 일제를 증오하게 하는 하나의 훈련 수단이기도 하다.

자. 기타 생활양상

사건과 여행자들의 보도에 의하면 공산당은 평양을 전시효과를 목적으로 도시로 건설하였다. 6차선으로 된 넓은 도로, 운동경기장, 호화스러운 호텔, 극장, 공원, 동물원 등으로 자기네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였다. 1967년에 말하기를 그 전에는 시민 배인당 28.7 평방야드의 녹지대를 가졌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56.2 평방야드로 되었다고 하였다. 1958년에 평양을 방문한바 있는 영국 상인이 1964년에 다시 가보고는 현대건축과 공공교통시설 시장의 소비품 등이 과거와는 전연 판판으로 되었더라고 하였다. 그러나 도로상에 뺨쓰와 튜럭 이외에 자동차는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마는 그곳의 생활은 교회도 없고, 서양영화도 금지되고 서양무용도 없는 건조한 것이다. 직장도 맘대로는 옮기지 못하고 결혼도 자유로히는 못하는 것이다.

1) 여행 제한

북한에서는 여행이 자유로운 것으로 되어 있는 있지만 실제로는 식량배급을 통한 통제와 직장을 지켜야 임금이 나오는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여하튼 여행은 비싸게 치인다. 평양으로

부터 청진까지 가는 200 마일을 하루 여행하는데 1968년에 50 ~ 60 원이 드는데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한달치 월급보다도 더 많은 액수이다. 국외여행은 공무원과 정부 또는 당대표에게만 허용된다.

주거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되어 있다. 이를테면 공인되지 않은 이사를 하게 되면 새 거주지에 등록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 등록 없이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식량 기타의 배급을 못받는다. 주민등록은 1966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때에 주민들은 일일이 관원의 면접과 기록조사를 받는데, 각 개인의 과거, 배경, 친분관계, 학력, 직업경력, 일제시와 한국통란시의 동향등을 조사 받는다. 그뿐 아니라 조장은 매일 아침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검열을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비밀경찰(안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서를 비롯하여 당원증, 제대증, 동맹회원증, 보건증 등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행 제한이 북송교포가 싫어하는 점이고 그네들이 제일 교포에게 한 편지는 북송을 원하는 교포수가 줄어든것도 사실이다.

2) 양 친

여성들로 하여금 직장에 나가게 하고 또 어릴적부터 부모와의 유대를 끊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유대를 길러주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망을 설치하였다. 1964년에 발표한 바만 하여도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 수가 130만명이라고 하였다. 한주일씩 머무는 아이도 있고, 한달동안씩 머무는 아이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일수다.

1968년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23% 증가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추정에 의하면 탁아소 23,251 개소에 877,000 명의 애
기가 수용되어 있고, 유치원이 15,218 개소에 790,000 명이 다니
고 있다. 어머니 들에게는 부과금이 있다. 1968 년의 공산당
방송에 의하면 3 년 동안에 탁아소가 83 배로 늘었고, 유치원은
동기간중에 14 배로 늘었기 때문에 산간 부락에 까지도 이 시설
이 생겼다고 하였다.

공산주의사상주입이 시작되는 것은 이 탁아소에서 부터이다. 애
기들은 어릴 적부터 자아비판하는 것을 배우고 자기 부모가 당
노선으로 부터 이탈된 행위를 하면 이것을 보고하도록 교육을 받
는다. 9 세가 되면 소년단에 가입하고 14 세가 되면 노동청동맹
에 가입함으로써 장차 노동당원 될 준비를 한다.

참 고 문 헌

- 1 . Rinn-Sup Shinn, John B. Folan, John W. Hendergon, Martlyn G. Hopkins, Edward C. Knoblock, Robert L. younglof: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October 1969. DA PAM No.550-81.
- 2 . 국토통일원 : 북한의 생활실태 : 1971.12.
- 3 . 국제홍보사 : 오늘의 북한 : 1971.9.1.